감항증명 발급 지침

Manual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D 15-5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국토교통부훈령 제2006호

이 훈령은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증명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합니다.

2026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 기록표

(RECORD OF AMENDMENTS)

개정차수 (Revision No.)	개정일자 (Revision Data)	철입일자 (Insertion Data)	철입자 (Insertion by)	근 거 (Refernce)
원 판	2007.09.18			제정 (항공안전본부훈령 제138호)
1차	2008.03.17			개정 (항공안전본부훈령 제192호)
2차	2009.06.05			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263호)
3차	2011.01.26			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675호)
4차	2012.05.3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등 30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안 (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5차	2012.10.23			개정 (국토해양부훈령 제907호)
6차	2013.04.15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35호)
7차	2013.06.10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43호)
8차	2015.05.12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등 21개 국토교통부훈령 재발령안 (국토교통부훈령 제527호)
9차	2017.06.05			항공안전법 분법으로 인한 관련 조항 수정으로 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 872호)
10차	2018.05.28			재검토 기한 재설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028호)
11차	2025.12.05			위임업무 범위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반영 (국토교통부훈령 제1914호)
12차	2026.11.04			표준감항증명 발급절차를 포함한 훈령 전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2006호)

목 차

감항증명 발급 지침 (Manual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D 15-5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 1

제1조 목적(Purpose) ····· 1
제2조 정의(Definitions) ····· 1
제3조 검사관 지정(Assignment of Inspectors) ····· 3

제2장 감항증명 일반 절차(General Procedures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3

제4조 신청 서류 등의 검토(Review of Application and Supporting Documents) ····· 3
제5조 감항증명 검사 기간(Airworthiness Certification Inspection Period) ····· 4
제6조 감항증명 검사 및 생략(Airworthiness Certification Inspection and Waiver) ····· 4
제6조의2 소음기준적합증명서 교부(Delivery of Noise Certificate) ····· 5
제7조 감항증명서 변경 및 재발급(Change and Reissuance of Airworthiness Certificate) ····· 5

제3장 표준감항증명 절차(Procedures for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5

제8조 항공기 서류검사(Aircraft Documents Inspection) ····· 5
제9조 항공기 상태검사(Aircraft Condition Inspection) ····· 7
제10조 항공기 시험비행(Aircraft Test Flight) ····· 7
제11조 표준감항증명서 발급 및 유효기간 지정 등(Issuance of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e, Determination of Validity Period, and Related Matters) ····· 7
제12조 표준감항증명서 양도 또는 반납(Transfer or Return of Standard Airworthiness Certfficate) ····· 8
제13조 외국 국적의 임차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인정(Acceptance of Airworthiness for Foreign-Registered Leased Aircraft) ····· 8

제4장 특별감항증명 절차(Procedures for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8

제14조 특별감항증명 분류(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ategory) ····· 8
제15조 특별감항증명 검사 및 기술검증(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Inspection and

Technical Verification) ····· 9
제16조 운용한계 지정(Designation of Operating Limitations) ····· 10
제17조 제한사항 부여(Imposition of Limitations) ····· 10
제18조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및 유효기간 지정 등(Issuance of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Determination of Validity Period, and Related Matters) ····· 11

제5장 감항성 유지 및 사후 관리(Maintenance of Airworthiness and Post-Management) ····· 11

제19조 감항성 상실 처리(Processing of Loss of Airworthiness) ····· 11
제20조 항공기 수시검사(Unscheduled Aircraft Inspection) ····· 12
제21조 항공기 현장검사(On-site Aircraft Inspection) ····· 13
제22조 재검토기한(Periodic Review) ····· 13

부칙(Addendum) ····· 13

[별표 1] 표준감항증명서 기재요령(Table 1 -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Standard Airworthiness Certificate) ····· 14
[별표 2]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 검사를 위한 안전 평가표(Table 2 - Safety Assessment Checklist for Experimental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 16
[별표 3] 특별감항증명서 기재요령(Table 3 -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Special Airworthiness Certificate) ····· 22
[별지 제1호서식] 신규 감항증명 서류검사표(Form 1 - Initi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Documents Inspection Checklist) ····· 24
[별지 제2호서식] 갱신 감항증명 서류검사표(Form 2 - Renew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Documents Inspection Checklist) ····· 27
[별지 제3호서식] 신규 및 갱신 감항증명 상태검사표(Form 3 - Initial and Renewal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ondition Inspection Checklist) ····· 30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수시검사 검사표(Form 4 - Unscheduled Aircraft Inspection Checklist) ····· 42

감항증명 발급 지침
(Manual for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제정 2007.09.18(항공안전본부훈령 제138호)
개정 2008.03.17(항공안전본부훈령 제192호)
개정 2009.06.05(국토해양부훈령 제263호)
개정 2011.01.26(국토해양부훈령 제675호)
재발령 2012.05.31(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
개정 2012.10.23(국토해양부훈령 제907호)
개정 2013.04.15(국토교통부훈령 제35호)
개정 2013.06.10(국토교통부훈령 제243호)
재발령 2015.05.12(국토교통부훈령 제527호)
개정 2017.06.05(국토교통부훈령 제872호)
개정 2018.05.28(국토교통부훈령 제1028호)
개정 2025.12.05(국토교통부훈령 제1914호)
개정 2026.11.04.(국토교통부훈련 제200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공안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및「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른 감항증명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증명”이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표준감항증명 및 특별감항증명을 포함한다.
   가. “표준감항증명”이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합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을 말한다.
   나. “특별감항증명”이란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항공기가 제작자 또는 신청자가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을 말하며 실험(Experimental), 제한(Restricted) 및 특별비행허가

(Special Flight Permit)로 분류한다.

2. “항공기 감항성”이란 「항공기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의 감항성 정의에 따라 감항증명 대상 항공기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Compliance) 승인한 형식 설계에 따라 합치하게(Conformity) 제작되었고 안전한 운용 상태(Condition of Operation)에 있음을 말한다.
3. “발급기관의 장”이란 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항증명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국토교통부의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항공청장을 말한다.
4. “감항감독관”이란 법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제31조, 제90조 및 제97조에 따라 증명·승인 또는 확인 등을 위해 항공기 또는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법 제132조에 따라 감항분야의 검사 등을 수행하는 감독관을 말한다.
5. “전문검사기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Technical Verification)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인증기술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가. 항공제품의 설계에 대한 적합성(Compliance) 확인 업무
   나. 항공제품의 합치성(Conformity) 검사와 이를 생산하는 시설의 품질시스템 평가 및 검사 업무
7.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이하 “나르미”라 한다)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의 과정 및 결과 등으로 생성된 안전데이터를 저장·기록하는 전자시스템으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제2조제17호 각 목의 안전데이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8. “운항 필수 장비”란 형식증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운항 목적상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부속서 6 및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이하 “운항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기에 추가로 장착이 요구되는 장비를 말한다.
9. “비행 프로파일”이란 감항증명을 위한 비행시험 시 항공기의 지상활주, 이륙, 상승, 순항, 하강, 접근 및 착륙 등에 이르는 전체 비행 단계별로 비행 경로, 고도, 속도 및 주요 점검 사항 등을 사전에 계획한 비행 순서 및 절차를 말한다.
10. “감항분류”란 항공기의 의도된 용도 또는 운용한계에 따라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감항요건을 충족하는 항공기에 대한 분류(보통, 실용, 곡예, 커뮤터, 수송 등)를 말한다.
11. “기술검증”이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이 인증기술자를 통하여 최초 및 특별감항증명 등 감항증명 활동과 관련하여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또는 장비품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기술자료, 적합성 입증 데이터, 시스템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기술기준의 충족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전문적 공학 평가 및 검토 업무를 말한다.

제3조(검사관 지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감항증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감항감독관 중에서 검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2.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
4.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감항증명을 위해 항공기 검사를 수행할 검사관 2명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특성 및 검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검사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 서류검사만으로 감항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감항증명 일반 절차

제4조(신청 서류 등의 검토) ① 표준감항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 표준감항증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감항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내에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
2.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
3. 형식설계 변경 목적의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

③ 검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2. 수입인지 제출 여부 및 적정 수수료 납부 여부(시행규칙 별표 47 제6호에 따른 금액을 확인할 것)
3. 기술기준 Part 21 부록 A의 감항증명 종류별 신청서류 제출(다만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및 수출감항증명서 등 신청서 제출 당시 제출하지 못한 서류는 감항증명 검사 종료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처리할 것)
4. 신청 대상 항공기 형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 여부(나르미 등을 통해 확인할 것)

④ 검사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서류 검토 결과 보완 또는 반려가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항공기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검사관은 표준감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단서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 발급을 신청하여 항공기 검사와 함께 기술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은 전문검사기관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기술검증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전문검사기관에 기술검증을 위탁한 사실
2. 기술검증을 위해 신청자의 제출 서류를 전문검사기관에 제공한다는 사실
3. 전문검사기관이 기술검증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에 대한 협조 사항 등

제5조(감항증명 검사) ① 검사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류 검토 결과 항공기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검사 기간, 장소, 검사관 명단 및 출장여비 납입기한 등을 포함하여 신청자에게 항공기 검사 실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감항증명을 위한 항공기 검사 기간(항공기가 위치한 장소까지 이동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3일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1.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인 항공기의 갱신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는 1일을 단축한다.
2.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인 중고 항공기의 신규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는 1일을 추가한다.
3. 제작일자가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라 한다)의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는 1일을 추가한다.
4.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인 항공기가 신규로 생산되어 수입하는 완제기의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는 1일을 단축한다. 다만 비행성능에 대한 시험비행을 생략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③ 항공기 검사 장소의 기상 상황이나 항공기 상태로 인해 검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검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에게 검사 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감항증명 검사 및 생략) ① 검사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한 항공기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1. 서류검사: 항공기등의 항공일지(log book), 항공기등에 관한 형식증명자료집(TCDS), 중량 및 평형 보고서, 매뉴얼 최신화 상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 적합성, 감항성개선지시서(AD) 이행 기록, 수리·개조 기록 등에 관한 검사
2. 상태검사: 항공기 외부 및 내부(객실, 화물칸 및 전자장비 등), 항공기에 장착된 운항 필수 장비의 손상 및 작동 상태 등에 관한 검사
3. 시험비행 :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별첨 검사표에 따른 검사대상 항공기의 비행 프로파일에 따른 비행성능에 관한 검사

② 검사관은 감항증명 검사기간 중 항공기 운영자가 수행한 시험비행 결과 보고서를 확인

하는 것으로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비행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시험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사관은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에 대해「전파법」제2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파관리소 및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포함한다)의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검사관이 해당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만족 항목을 확인한 경우 제11조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승인받지 않은 형식의 의무무선설비를 장착한 경우
2. 기체의 강도 또는 기타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비행교범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④ 감항증명 발급을 위하여 검사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항공기의 시험비행의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없이 수행할 수 있다.

⑤ 감항증명서 발급을 위한 항공기 검사 기간 중 불만족 항목이 해소되지 않아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신청자가 감항증명서 발급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검사관은 이전 항공기 검사 기간 중 만족으로 확인된 항목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음기준적합증명서 교부) 검사관은 신청자가 감항증명 신청서와 함께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기술기준 Part 36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음값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술기준 Part 36 별첨 G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작성하여 표준감항증명서와 함께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감항증명서 변경 및 재발급) ① 감항증명서 소지자가 감항증명서의 분류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발급기관의 장에게 감항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 결과 변경하려는 내용이 종전 감항증명서에서 수행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해당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감항증명서의 변경 또는 재발급 신청이 훼손, 분실 또는 등록기호 변경 등 단순 행정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관은 감항증명 발급을 위한 항공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표준감항증명 절차

제8조(항공기 서류검사) ① 검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규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갱신 감항증명 서류검사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항공기의 서류를 검사해야 한다.

1. 항공기등에 대한 형식증명자료집의 형식과 지상비치용 항공일지에 기재된 형식의 일치 여부
2. 수출감항증명서의 항공기등에 대한 정보와 지상비치용 항공일지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신규 도입 항공기에 해당한다)

3. 중량 및 평형 보고서의 정보가 해당 항공기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
4. 해당 항공기 제작사의 온라인 기술자료에 게시된 정비교범, 부품도해목록 및 비행교범 등 기술자료의 최신 개정 현황이 신청자가 확보한 교범과 일치하는지 여부
5. 승인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 제4호에서 확인한 교범 등의 최신 개정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정비교범의 시한성 품목 및 계획 정비를 충실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6. 신청자가 확보한 장비 목록의 장비가 정비교범에 따른 계획정비, 수리 및 장비품·부품 교환 등에 필요한 장비 목록과 호환 또는 일치하는지 여부
7. 신청자가 확보한 정밀측정 장비의 검·교정 일자, 검사기관의 유효성 및 정비사의 자격의 적정성(해당 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특정 자격을 요구하는 장비가 있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정비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8. 정비 작업지시서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정비교범의 최신 개정 현황
   나. 정비교범의 해당 정비 절차에 대한 적정성
   다. 정밀측정장비를 통한 측정값
   라. 정비사의 정비확인 직인 또는 서명
9. 지상비치용 항공기등의 항공일지에 기록된 주요 정비·계획 점검,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최소장비목록(MEL) 이월, 시한성 품목의 교체 등 정비 기록과 각 정비 항목에 대한 정비 작업지시서 및 감항성 승인서 등 증빙 서류 확보·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10. 해당 항공기에 적용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검토 및 이를 수행한 작업지시서의 적정성(나르미의 해당 감항성개선지시서 이행결과 보고 실적을 확인한다)
11. 항공기 대수리·개조 승인, 부가형식증명 작업을 수행한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지속적 항공기 감항성 유지 지침서(Instructions for Continuous Airworthiness of Aircraft)에 따른 정비 기록을 관리하는지 여부 등

② 검사관은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되는 표준감항증명서 교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자의 항공기 감항성 유지 능력(정비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능력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1.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한 시설, 장비, 자재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2. 항공기 정비작업 후 사용 “가” 판정(Approved for return to service)을 할 수 있는 정비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3. 해당 항공기에 대한 정비프로그램 또는 검사프로그램을 인가받고 1년 이상(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의 경우 5년 이상)의 항공기 운영 경험이 있는지 여부(동일한 종류의 항공기 운영 경험을 포함한다)
4. 신청자가 법 제97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항공기 정비를 위탁한 경우 검사관은 나르미를 통해 정비 업무 범위와 한계를 확인해야 한다.

③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항공기 종류에 따라 제2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항공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700kg 초과인 비행기
2.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인 비행기
3. 최대이륙중량 3,175kg 초과인 헬리콥터
4. 최대이륙중량 3,175kg 이하인 헬리콥터

제9조(항공기 상태검사) 검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항증명 상태검사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기의 내·외부, 전기·전자 탑재실(Avionics bay) 손상·결함·고장 여부 및 운항 필수 장비의 상태 등을 검사해야 한다.

1. 비행기의 경우 동체 전방, 전방 착륙장치, 주날개 및 엔진, 주 착륙장치, 동체 중앙, 수직·수평 꼬리날개, 보조동력장치, 동체 후방, 조종실, 객실, 화장실 및 화물실, 전기·전자 탑재실의 부식, 손상 등 결함 유무
2. 헬리콥터의 경우 동체 전방, 전기·전자 탑재실, 주회전익(Main rotor), 동체 중앙, 테일 붐(Tail boom), 수직 및 수평 꼬리날개 또는 꼬리 회전익(Tail rotor), 동체 후방, 착륙장치 또는 착륙 스키드(Landing skid), 조종실, 객실, 화물실의 부식, 손상 등 결함 유무

제10조(항공기 시험비행) ① 검사관은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에 따라 시험비행을 통해 항공기의 비행성능을 검사해야 한다.

② 검사관은 시험비행 시 점검항목을 조종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비행시험 검사표를 제8조에 따른 서류검사 단계에서 조종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검사관은 탑승 전 지상에서 항공기의 이륙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 항공기 좌·우 위치 표시등, 하부 위치 표시등, 충돌방지등, 지상활주등 및 착륙등의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제11조(표준감항증명서 발급 및 유효기간 지정 등) ① 검사관이 감항증명 검사 결과 불만족 항목을 확인한 경우에는 불만족 사유를 포함한 검사 결과와 함께 표준감항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검사 기간 중 신청자가 해당 불만족 항목을 만족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검사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표준감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형식증명 및 제작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 표준감항증명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다.

③ 검사관의 검사 결과 항공기가 적용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운항기술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항공기의 비행교범을 운용한계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기관의 장은 운용한계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준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종전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 합격한 때에는 종전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기산해야 한다.

⑤ 검사관이 신청자의 지속적 항공기 감항성 유지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되는 표준감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은 매년 기술기준 Part 21 부록 G의 항공기 현황자료 및 최근 1년간의 주요 정비 실적을 제출할 의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검사관은 별표 1의 표준감항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미리 작성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표준감항증명서를 휴대하여 항공기 검사 장소에서 항공기 검사 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표준감항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해당 항공기의 유효한 등록증명서를 확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

⑦ 검사관은 표준감항증명서를 교부할 때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⑧ 제6조의2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검사관은 표준감항증명서를 교부할 때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한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제12조(표준감항증명서 양도 또는 반납) ① 표준감항증명서 소지자는 해당 항공기를 국내에서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표준감항증명서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해외로 수출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정기한 내에 표준감항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은 그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고, 검사관은 그 사실을 해당 표준감항증명서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외국 국적의 임차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인정) ① 법 제5조에 따라 임차한 외국 국적 항공기의 등록국이 감항성 인증 및 감독 책임을 대한민국에 이양하는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그 등록국이 발급한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감항증명서 소지자에게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허가 문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유효기간은 등록국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하려는 경우 검사관은 사전에 그 등록국의 항공안전 감독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권한 이양 및 감항성 인정에 관한 세부절차는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 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다.

제4장 특별감항증명 절차

제14조(특별감항증명 분류) 발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감항증명을 분류

하여 발급해야 한다.

1. 실험분류: 연구개발, 전시 및 시장조사, 조종사 훈련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항공기(무인항공기를 포함한다)
2. 제한분류: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산불진화, 수색구조, 구조·구급, 농·수산업, 기상관측·기상조절 실험,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외부 화물 운송(헬리콥터에 한정한다)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3. 특별비행허가: 항공기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항공기의 형식증명 변경을 위해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 제작·정비·수리·개조 후 시험비행, 정비·수리를 위한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한 공수비행(Ferry Flight), 수출입을 위해 승객이나 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하는 비행

제15조(특별감항증명 검사 및 기술검증) ① 검사관은 특별감항증명을 위해 항공기를 검사해야 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검사관은 실험분류의 특별감항증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

1. 비행 목적
2. 비행 경로
3. 탑승한 승무원(기장, 기장 외의 조종사 또는 항공사 직원 등)에 관한 사항(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원격조종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 항공기가 적용되는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대처 방안
5. 법 제51조에 따른 항공기의 의무무선설비 장착 여부(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그 항공기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장소에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6.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한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이 제4조제5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기술검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인증기술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인증기술자는 기술검증을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 검사관은 별표 2의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 검사를 위한 안전 평가표에 따라 인증기술자가 제출한 기술검증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항공기 형태 및 특징에 따라 별표 2의 안전 평가표에 부가적인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⑥ 인증기술자는 검사관으로부터 기술검증 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보완해야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검사관은 기술검증 결과 보고서, 비행계획서, 비행교범 및 비행 단계별 제한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기 검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검사관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기술자료 중 영업비밀 또는 대외비 등 민감한 자료

는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게 보관한 자료는 그 특별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제16조(운용한계 지정) ① 검사관은 검사 결과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운용한계로 지정해야 한다.

1.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서가 발급되는 항공기: 비행교범
2.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서가 발급되는 항공기: 기술검증을 거친 비행교범 또는 비행 프로파일 및 비행한계 등이 적힌 서류

② 실험분류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비행시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한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초기 시험비행 단계: 항공기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입증될 때까지 인구 희박 지역 또는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적은 지역 및 해상 등으로 지정된 시험비행 공역 내에서만 비행할 것
2. 시험비행 완료 단계: 초기 시험비행을 통해 위험성이 없다고 입증된 경우 승인된 비행 프로파일 및 운용한계 내에서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비행을 허용할 것

제17조(제한사항 부여) 발급기관의 장은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사항을 부여해야 한다.

1. 탑승 인원은 비행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제한할 것
2. 항공기 조종은 유효한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한할 것
3.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허용된 업무 목적 외 인원 및 화물의 유상운송은 금지할 것
4. 항공교통 밀집 지역 및 지상의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이 있는 지역은 피할 것
5. 비행 전에 공역 및 항공로의 사용 또는 비행과 관련하여 관할 관제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6. 항공기 이상 등 비정상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과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할 것
7. 특별감항증명서를 항공기에 탑재하거나 게시할 것(무인항공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에 따른 성능, 운용한계 및 발급기관의 장이 특별감항증명서에서 정한 제한사항의 범위에서 비행할 것
9. 특별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비행할 것
10. 항공기에 부여된 등록부호는 그 항공기에 표시할 것
11. 모든 비행은 운항하는 국가의 일반적인 운항절차를 준수할 것
12. 항공기가 ICAO 부속서 8에서 정한 감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외국의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 운영자는 비행 전 그 국가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authorization)을 받을 것

1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8조(특별감항증명서 발급 및 유효기간 지정 등) ① 제15조에 따른 검사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국내에서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대한 최초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서
2.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서
3. 형식설계 변경 목적의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② 발급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운용한계 및 제17조에 따른 제한사항을 반영한 운용한계 지정서를 특별감항증명서와 함께 발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해당 비행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제한분류: 1년 이내의 해당 비행 목적에 필요한 기간 또는 운영자의 항공기 감항성 유지 능력을 확인한 경우 자동 연장
2. 실험분류: 1년 이내의 실제 비행하려는 기간
3. 특별비행허가: 비행일자 또는 비행기간

③ 검사관은 별표 3의 특별감항증명서 기재요령에 따라 미리 작성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감항증명서를 휴대하여 항공기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마친 후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 점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교부할 수 있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검사관이 신청자의 지속적인 항공기 감항성 유지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지방항공청장이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되는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검사관은 신청자에게 매년 기술기준 Part 21 부록 G에 따른 항공기 현황자료 및 최근 1년간의 주요 정비 실적을 제출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⑥ 검사관은 제3항에 따라 특별감항증명서를 교부할 때 발급기관의 장이 발급한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제5장 감항성 유지 및 사후 관리

제19조(감항성 상실 처리) ① 검사관은 항공기 사고, 준사고 또는 고장 등의 발생으로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된 사실을 접수한 경우 해당 손상으로 인해 항공기가 감항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를 해당 항공기에 적용되는 감항성 요구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② 발급기관의 장은 항공기가 감항성을 상실한 경우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회복할 때까지 항공기 운항 및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해당 감항증명서 소지자에게 항공기 운항 정지 및 감항증명서 효력 정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 항공기의 감항성 회복을 위한 수리·정비 시설로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발

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제한사항을 부여하여 특별비행허가를 위한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발급기관의 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자가 운용하는 항공기가 공수비행 특별비행허가에 관한 운영기준(D084)을 함께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으로부터 특별비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 영토에서 손상이 발생하여 감항성을 상실한 항공기의 특별비행을 허가하려는 경우 검사관은 ICAO 부속서 8 Part II 3.6.2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재개를 금지한 외국 감항당국이 제기한 모든 제한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⑥ 발급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외국 항공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은 지체 없이 해당 등록국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⑦ 등록국가의 감항당국이 제한 조건을 부가하여 공수비행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제한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사관의 검토 결과에 따라 비행을 허용해야 한다.

제20조(항공기 수시검사) ① 지방항공청장은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 감항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항공기 감항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 수시검사 점검표에 따라 항공기 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감항증명서 유효기간이 1년인 항공기에 대하여는 항공기 수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검사관은 항공기 수시검사를 할 때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 등의 추가적인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검사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에 따라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감항증명서 소지자가 제출한 기술기준 Part 21 부록 G에 따른 항공기 현황자료 및 최근 1년간의 주요 정비 실적을 검토해야 한다.

④ 지방항공청장은 감항증명서 소지자가 정해진 시한 내에 제3항에 따른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항공기 감항성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그 사실을 감항증명서 소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검사관은 서류검사를 할 때 현장검사 대상 항공기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험기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항공기 기종별 운영 현황,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 현황
2. 경년항공기 해당 여부 및 정비로 인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 현황
3.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 감항증명서 발급 이후 경과기간
4. 기타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 검사관은 현장검사 대상 항공기 선정 결과에 따라 감항증명서 소지자에게 검사 기간, 장소, 검사관 명단, 현장검사 선정 이유, 필요한 경우 항공기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 실시를 통지해야 한다.

제21조(항공기 현장검사) ① 검사관은 항공기 현장검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 수시검사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

1.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정비개선회보, 정비, 오버홀, 수리 및 개조가 관련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방법 및 기준·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경년항공기의 경우 정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 수행 현황)
2. 정비 또는 수리·개조 등을 수행하는 경우 항공기에 대한 감항성 여부를 항공일지에 적합하게 기록하는지 여부
3.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중량 및 평형 측정 수행 여부 및 실적이 있는 경우 그 보고서의 적절성
4. 항공기 정비 후 운항기술기준에 따른 사용가능상태로 환원(return to service)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5. 정비확인 시 종결되지 않은 결함사항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
6. 감항증명서 소지자가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고장이나 결함 발생시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형식증명소지자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
7. 항공기 소유자가 형식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 및 제작사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아 검토 및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8. 반복결함 발생 및 조치현황 등

② 검사관은 항공기 현장검사 결과를 감항증명서 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그 감항증명서 소지자에게 항공기 감항성 유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감항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그 소지자에게 효력 정지 사유와 함께 감항증명 재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감항증명 발급 지침 [별표 1]

표준감항증명서 기재요령(제11조제6항 관련)

1. 증명번호(Certificate No.) : 표준감항증명서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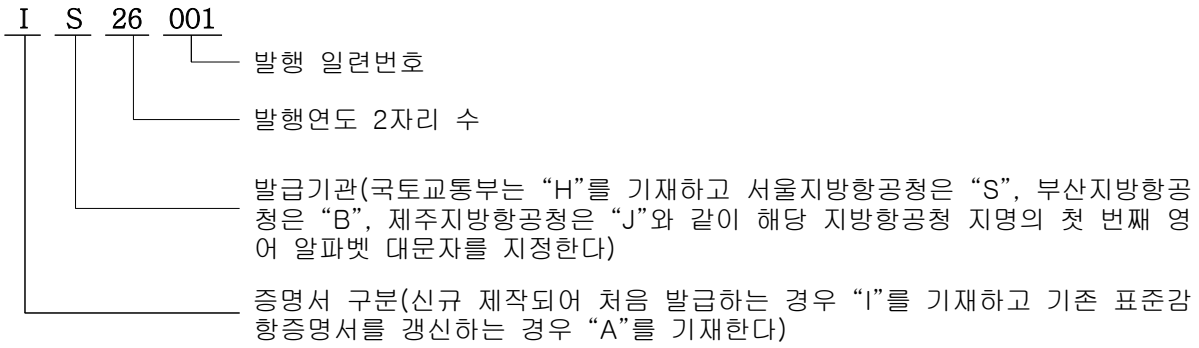

2. 국적 및 등록기호(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 우리나라의 국적 및 등록기호를 기재한다. 다만, 등록 이전의 경우 지정받은 등록기호 또는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Manufacturer and manufacturer's designation of aircraft) : 해당 항공기의 제작자 명칭과 항공기 형식을 기재한다.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Aircraft serial number) : 해당 항공기의 제작사 지정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5. 운용분류(Operational category) : 항공기 신청자의 항공기 운용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국제, 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운송사업용(Air Transportation)"

나. 항공기 사용사업자 : "사용사업용(Aerial Work)"

다. 자가용 신청자 : "자가용(Private)“

라. 국가기관등 항공기 운영자 : ”국가기관등(Public)“

6. 감항분류(Airworthiness category) : 항공기에 적용되는「항공기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Part 23 : "비행기(일반) Aeroplane(N)", "비행기(실용) Aeroplane(U)", "비행기(곡예) Aeroplane(A)", ”비행기(일반·실용) Aeroplane(N&U)"

나. Part 25 : "비행기(수송) Aeroplane(T)"

다. Part 27 : "헬리콥터(일반) Helicopter(N)”

라. Part 29 : "헬리콥터(수송) Helicopter(TA)", "헬리콥터(수송) Helicopter(TB)", "헬리콥터(수송) Helicopter(TA&TB)"

7. 발행연월일(Date of issuance) : 표준감항증명서를 발행하는 일자(YYYY.MM.DD)를 기재한다.

8. **유효기간(Validity period) :** 표준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갱신 전 표준감항증명서의 만료일이 2026.10.20.이고 검사완료일 2026.10.01.인 경우

▣ 부터	까지
From: 2026.10.21	To: 2027.10.20

나. 자동 연장되는 표준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이 항공기의 감항증명은 정지 또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Pursuant to Article 23 of the Aviation Safety Act, this certificate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uspended or restricted.

9. **발급기관 :** 발급기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dministrator of ○○ Regional Office of Aviation”을 수정한다.

10. **검사관 및 확인날짜(Inspector and date) :** 검사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며 확인날짜는 서명한 날짜를 기재한다. 검사관이 2명일 경우, 검사관 모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9. 검사관 및 확인날짜” 아래의 항목(검사관 및 서명)을 수정할 수 있다.

■ 감항증명 발급 지침 [별표 2]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 검사를 위한 안전 평가표(제15조제5항 관련)

구분	평가 기준	입증 자료 또는 제한사항
1. 항공기 부분 (Aircraft Segment)	**a. 기체** (1) 항공기 크기와 중량을 포함한 물리적인 형상과 특성을 상세히 기술하라. 필요하면 시스템적인 연결관계와 계통도 등 설명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2) 항공기에 적용되는 재료를 설명하고 부착되는 위치를 기술하라. 가공, 조립공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항공기 구조물이 예상되는 비행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을 기술하라. 비행 중 충분한 구조적 안전 여유도를 입증하는 시험 값 및 응력해석을 포함해야 한다. (4) 유압시스템, 환경제어시스템, 낙하산 또는 제동장치와 같은 모든 특별한 하위 시스템 또는 설계특징을 기술하라.	
	b. 항공기 성능 특성 (1) 최대고도 (2) 체공시간 (3) 순항속도 (4) 최대속도 (5) 풍속이나 최소/최대 온도 한계 같은 환경 및 기상조건으로 인한 성능적인 제한사항 (6) 항공기가 결빙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경우, 결빙 감지 기능이나 결빙에 대한 보호능력	
	c. 추진 시스템 (1) 추진 시스템의 설계와 성능을 상세히 기술하라. (2) 연료 추진 시스템의 경우 사용가능한 연료의 종류와 최대 가용연료량을 기술하라. (3) 상태 표시기와 경고 메시지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추진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고 시현되는 방법을 기술하라. (4) 추진과 관련된 치명적인 고장 모드와 그것이 시스템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라.	
	d. 연료 시스템 (해당사항이 있으면) 연료 저장소 및 분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연료가 엔진으로 적절히 공급되도록 제어하는 방법 및 비행승무원에게 잔여연료의 측정값을 제공하는 방법을 기술하라.	
	e. 전기 시스템 (1) 전기 시스템에 대해 기술하고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라. 그리고 항공기 전체의 전력 배분을 보여주는 시스템 수준의 계통도를 제시하라. (2) 배터리 같이 수명이 제한된 전원을 사용하는 경	

	우, 정상 및 비상 조건에서 그 전원의 유효 수명과 결정 방법을 기술하라. (3) 전력 상태와 잔여 전력에 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보여주는 방법을 기술하라. (4) 주전원이 상실된 경우를 대비한 예비전원에 대해 기술하고, 예비전원 가동 시 어떤 시스템에 전력이 공급되는지 기술하라. (a) 자동이나 수동 부하 차단 기능에 대해 기술하라. (b) 예비전원으로 얼마동안을 운용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이를 결정한 가정 사항들을 기술하라.	
	f. 비행 조종면과 작동기 비행 조종면과 서보/작동기의 설계와 작동에 대해 기술하라. 조종면과 서보/작동기의 위치가 표시된 계통도를 포함해야 한다.	
	g. 유상하중 항공기에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유상하중에 영향에 해당하는 임무장비를 기술하라. 모든 임무장비 형상을 기술하라. 그리고 중량과 평형, 전기 부하나 비행특성을 상당히 변화시키는 유상하중의 분포 및 형상 등을 기술하라.	
2. 지휘 통제 부분 (Command and Control Segment)	**a. 항공 전자** 항공 전자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항공 전자 시스템 구성의 전반적인 시스템 계통도를 제시하라. 그리고 모든 대기자료센서, 안테나, 라디오, 항법 장치의 위치를 포함해야 한다.	
	b. 항법 항법 시스템과 해당 시스템의 백업들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항법 기능 상실에 대해 식별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라.	
	c. 비행 제어 및 자동 조종 시스템 비행 제어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비행 조종 컴퓨터와 자동 조종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이 특별한 설계 또는 상용품(COTS)인지 여부를 명시하라.	
	d. 명령 및 제어 데이터링크 (Command and Control Datalink) (1) 무인항공기(UA)와 원격조종실을 연결하는 C2 링크의 성능과 설계에 대해 기술하라.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여분의 독립적인 제어링크를 식별하라. (2) C2 링크에 사용되는 무선 주파수 (RF) 스펙트럼을 기술하라. (3) 무선 신호 강도, 신호 오류율 또는 이와 유사한 정보를 어떻게 계산하고 조종사에게 시현하는지 기술하라. 그리고 신호가 심각하게 저하되었음을 나타내는 임계치를 식별하라.	
	e. 링크 두절 및 비행 회복 (Lost Link and Flight Recovery)	

	(1) 무인항공기시스템(UAS)의 링크가 두절될 경우 따라야 할 비상절차를 기술하라. 링크 두절 타이머와 같이 발생 이벤트의 시간요건 대한 설명과 링크 두절 비상절차 중 이착륙 및 순항 시 조종사에게 어떤 정보를 시현하는지 기술하라. (2) 무인항공기(UA)의 비행 회복 기능과, 비행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단일 사건이나 복합 사건의 종류, 비행 회복 절차 중에 항공기가 작동되어 있는지 기술하라.	
	f. 원격조종실 (1) 원격조종실 설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라. 가능하다면 원격조종실의 배치도를 제시하라. 그리고 원격조종실 주요 시현장치의 화면 이미지를 제시하라. (2) 시스템이 조종사에게 제시하는 모든 주의, 경고 및 조언안내에 대해 기술하라 (예: 연료부족, 배터리 부족, 중요 시스템 고장, 운용 경계 이탈).	
3. 지상 지원 장비 (Ground Support Equipment)	**a. 지상 지원 장비** 발사/회수 시스템, 지상데이터 단말기, 외부 발전기 등이 포함된 중요 지상 지원 장비를 목록과 설명을 제출 하라.	
4. 소프트웨어 개발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a.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공급사에 의하여 개발되는 소프트웨어 기능과 상용 소프트웨어(COTS)에 의하여 구현되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무엇인지 식별 하라.	
5. 운용 (Operations)	**a. 국가 공역 체계 (NAS) 통합 및 상호작용** (1) 감시 및 항공기 시인성(視認性) (a) 항공기에 기술표준품(TSO)으로 승인된 Mode-C이나 Mode-S 트랜스폰더가 장착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승인된 트랜스폰더에 적용된 TSO와 장비품 등급은 어떻게 되는가? (b) 항공기에 기술표준품으로 승인되지 않은 Mode-C이나 Mode-S 트랜스폰더가 장착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트랜스폰더가 TSO-C74d (Mode-C) 또는 TSO-C112 (Mode-S)의 모든 등급의 성능과 환경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기술하라. 그리고 기술표준서와의 성능표준 불일치 또는 성능표준에 없는 모든 기능을 강조하여 표시하라. (c) 조종사가 트랜스폰더의 어떤 기능이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 (d) 트랜스폰더 시험 절차를 기술하라 (MOLIT AD 2000-243 참고) (e) 항공기에 다른 조종사가 보고 그 항공기를 피할 수 있게 하고 관찰자가 항공기를 시각적으로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가시성 높은 페인트 배색이 있는가? (f) 항공기의 어떠한 형태와 구조적 특징이 항공기의 시인성(視認性)과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가?	

	(g) 항공기에 충돌방지등이 있는가? 그 항공기에 위치등이 있는가? 그 조명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가? (h) OPA(Optionally Piloted Aircraft)의 경우 조종석에 계기와 조종석 조명이 있는가? (2) 항공 교통 관제와 승무원 통신. (a) 조종사는 ATC와 어떻게 통신하는가? (b) 조종사는 영공의 다른 사용자와 어떻게 통신하는가? (c) 항공기의 모든 장비에 포함된 통신 장비 (라디오)에 대해 기술하라. (d) 조종사와 지상 지원 요원, 승무원, 관찰자 간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 통신 시스템이 있는가? (e) 인터컴 고장을 대비해 어떤 절차가 수립되었는가? (3) 감지 및 회피(Sense and Avoid) (a) 감지 및 회피를 위해 준비된 방법을 기술하고 이를 담당하는 승무원을 확인하라. (b) 항공 교통을 감지할 수 있는 방위각(azimuth)과 고도각(elevation)의 최소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c) 다른 사용자가 국가공역시스템(NAS)의 운항 구역에 진입할 경우 시행될 절차를 기술하라. (4) 추적 항공기 운용 (a) 추적 항공기 승무원의 역할과 책임을 기술하라. **주의: 추적 항공기 조종사는 추적 항공기를 운용하는 중에 관찰자 임무나 무인항공기 조종사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1 조종사. 2 관찰자들. (b) 추적 항공기 승무원이 받을 특수 훈련에 대해 기술하라.	
	b. 비행 단계 (1) 비행전/지상 활주 (a) 기상 보고와 기상 상태의 갱신 등 을 포함한 전체 비행 계획 절차 기술하라 (b) 이륙 전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ATC)와 조정 절차 기술하라. 1 항공고시보 (NOTAM) 2 비행 계획 제출 3 트랜스폰더 코드 (c) 비행전 활동과 최소한 다음 사항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및 지원 장비 기술 1 비행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하는 절차 2 비행을 위해 시스템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3 비행제어 교정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형상 파일 같이, 절차상 중요한 항목 수립 (d) 원격조종실 지도의 갱신 방법의 기술 (e) 비행 대기선/운용 안전 프로그램의 기술 (f) 지상 활주 경로가 비어있는지 확인할 절차 기술	

	(g) 지상 요원의 부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엔진이 시동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절차 기술 (2) 착륙과 회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장비의 기술하고 특유한 시스템의 성능과 절차 식별하라 (3) 비행 후. (a) 지원장비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시스템(UAS)이 안전한 비행을 위해 요구되는 부품 식별하라. 식별된 부품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1 비행 후 시스템이 운용되는 과정. 2 비행 후 시스템이 운용되는데 필요한 시스템. 3 절차상 중요한 항목 수립 (b) 비행 후 검사 절차의 기술하라. (c) 사고/준사고 보고 절차 기술하라.	
	c. 운용 구역 (1) 비행 운용 구역에서 비정상적인 지상 활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기술하라. 예를 들면 주말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가? 주거 지역이나 공공 집회 장소가 있는가? (2) 제안된 운용 구역을 통하는 군사 경로나 민간 경로를 확인하라. (3) 항공지도에서 제안된 운용 구역을 확인하라. 제안 구역은 측면 경계와 요청 고도를 정해야 한다.	
	d. 비행 영역 선도와 시험 계획 (1) 비행영역 선도의 시험 조건을 기술하라. 해당 활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주요 고속도로에 얼마나 가까운가? (2) 제안된 비행영역 선도와 운용 구역에서 시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 기술하라. 가능하면 시험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e. 운용 이력 세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항공기시스템의 운용이력을 기술하라. (1) 항공기의 총 비행 횟수와 비행 시간. (2) 시스템 고장, 사고/준사고, 비상상황, 그 결과로 인한 개조 또는 시정사항	
	f. 교범 (1) 항공기의 운용 교범 보유하는가? (2) 운용 교범에 항공기의 모든 제한 사항이 한 세션에 제시되는가? (3) 비상 절차의 수행 단계를 기억하기 위해 굵게 표시 또는 밑줄 표시하여 강조하는가? (4) 전 운용 단계에 대한 운용 점검표를 보유하는가? (5) 정상, 비정상, 또는 비상절차에 대한 별도의 점검표 항목을 보유하는가?	
6. 그 외 고려사항 (Organization	**a.조종사/승무원 자격/교육** 운항기술기준의 아래 조건 해당자	

considerations)	2.2 조종사 및 비행교관의 자격 2.3 조종사 이외의 운항승무원 자격증명 2.4 운항승무원 이외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1) 승무원 :승무원 자원 관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하라 (2) 조종사 (a) 조종사에게 유효한 조종사 증명서가 있는가? 그렇다면 조종사 증명서의 종류는 무엇인가? (b) 조종사에게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이 있는가? 그렇다면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등급은 무엇인가? (c) 조종사가 적절한 훈련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술 및 참고하라 (d) 기장, 보조 조종사, 추적 조종사를 포함한 모든 조종사를 대상으로한 공식 교육 과정 확립되어 있는가? (e) 조종사 형식 한정자격과 해당 항공기의 자격이 있는가? (3) 관찰자 (a) 관찰자에게 유효한 조종사 증명서가 있는가? 그렇다면 조종사 증명서의 종류는 무엇인가? (b) 관찰자에게 유효한 의료 증명서가 있는가? 그렇다면 의료 증명서의 등급은 무엇인가? (c) 관측과 회피,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요건, 통행우선권과 같은 해당 항공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d) 관찰자가 현재 조종사인가? 교육 과정을 이수했는가? 모든 관찰자를 위한 공식 교육 과정이 있는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현장점검 중 제시하라 (e) 관찰자를 비행 팀의 실질적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올바로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라. (f) 관찰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라 1 적절한 의사소통 및 어법 2 적절한 시각 탐지 기술 3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표준 비행 운용 4 격리 구역 및 해당 지역 내에서 무인항공기(UA)가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b. 정비 정비 및 검사 프로그램 확립 여부	

■ 감항증명 발급 지침 [별표 3]

특별감항증명서 기재요령(제18조제3항 관련)

1. **증명번호(Certificate No.) :** 특별감항증명서의 번호는 발급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S H 26 001

- 001 — 발행 일련번호
- 26 — 발행연도 2자리 수(2026년의 경우 26)
- H — 발급기관(국토교통부는 “H”를 기재하고 서울지방항공청은 “S”, 부산지방항공청은 “B”, 제주지방항공청은 “J”와 같이 해당 지방항공청 지명의 첫 번째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지정한다)
- S — 증명서 구분(특별 “S”를 기재한다)

2. **국적 및 등록기호(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 우리나라의 국적 및 등록기호를 기재한다. 다만, 등록 이전의 경우 지정받은 등록기호 또는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3.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형식(Manufacturer and manufacturer's designation of aircraft) :** 해당 항공기의 제작자 명칭과 항공기 형식을 기재한다.

4. **항공기 제작일련번호(Aircraft serial number) :** 해당 항공기의 제작사 지정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5. **특별감항증명 분류(Certificate category) :**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제1호에 해당 : "실험(Experimental)"
   나. 제2호에 해당 : "제한(Restricted)"
   다. 제3호에 해당 : "특별비행허가(Special Flight Permit)"

6. **용도(Purpose) :**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신청자가 요청한 비행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연구·개발 목적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나. 판매・홍보 목적 : ”판매 및 홍보(Sales and Promotion)“
   다. 전시・시장조사 목적 : "전시 및 시장조사(Exhibition and Market Survey)"
   라. 조종사 양성을 위한 조종연습 목적 : “조종연습(Flight Training)”
   마.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성능 확인 목적 : “비행시험(Flight Test)”
   바.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성능 확인 목적 : “시험비행(Test Flight)”
   사. 수입・수출 또는 정비・수리・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비행 목적 : ”공수비행(Ferry Flight)“
   아. 제14조제2호 목적 : “산불진화 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호의 업무(Special Purpose Operations)“

7. **제한사항(Limitations) :** 제17조의 제한사항을 기재한다. 만약 기재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명서 뒤쪽에 기재하고 해당 칸에는 “뒤쪽 참조(See reverse side)”를 기재하여 뒤쪽에 기재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 ICAO Annex 8 의무 선언

특별감항증명서는 ICAO 부속서 8의 감항기준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기에 발급되므로, 국내 운항 전용으로 발급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17조제12호를 기재해야 한다.

8. **발행연월일** : 특별감항증명서를 발행하는 일자(YYYY.MM.DD)를 기재한다.

9. **유효기간(Validity period)** : 특별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가. 유효기간이 1년인 기존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서(만료일 : 2026.10.20.) 갱신을 위한 검사(검사 완료일 : 2026.10.01.) 후 발급하는 경우

▣ 부터	까지
From: 2026.10.21	To: 2027.10.20

나. 자동 연장되는 제한분류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발급일 : 2026.10.01.)

▣ 부터	까지
From: 2026.10.01	To:「항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이 항공기의 감항증명은 정지 또는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Pursuant to Article 23 of the Aviation Safety Act, this certificate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suspended or restricted)

다. 특별비행허가 또는 실험분류 특별감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비행기간을 지정한다.

10. **발급기관** : 발급기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과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dministrator of ○○ Regional Office of Aviation”을 수정한다.

11. **검사관 및 확인날짜(Inspector and date)** : 검사관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며 확인날짜는 서명한 날짜를 기재한다. 검사관이 2명일 경우, 검사관 모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10. 검사관 및 확인날짜” 아래의 항목(검사관 및 서명)을 수정할 수 있다.

■ 감항증명 발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3쪽 중 1쪽)

신규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 항공기 현황

가. 항공기체			
1) 등록기호	HL	2) 운영자명	
3) 검사장소		4) 검사기간	~
5) 항공기 종류		6) 항공기 형식명	
7) 감항 분류		8) 사업구분	
9) 등록증명서	번호:	10) 등록일자	
11) 등록 정치장		12) 운용한계지정서	번호:
13) 감항증명서	번호:	14) 유효기간	~
15) 제작사			
16) 제작일련번호		17) 제작일자	
18) 최대이륙중량		19) 최대착륙중량	
20)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	21) 정비 후 시간 /사용횟수	/
22) 최근 주요 정비	정 비 명		
	정비 확인자/업체	(자격번호:)	

나. 엔진 (장착 수:)				
1) 엔진 형식명				
2) 제작사				
3) 장착위치	#1	#2	#3	#4
4) 제작 일련번호				
5) 제작일자				
6)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7) 장착일자				
8) 최근 주요정비명 (수행일자)				

다. 프로펠러 (장착 수:)				
1) 프로펠러 형식명				
2) 제작사				
3) 장착위치	#1	#2	#3	#4
4) 제작 일련번호				
5) 제작일자				
6)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7) 장착일자				
8) 최근 주요정비명 (수행일자)				

□ 서류검사

검사 항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1	**제출서류 심사**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가. 형식증명서(또는 형식증명승인서), 형식증명자료집(TCDS)의 해당 및 유효 여부		□	□	□
	나. 수출감항증명서 유효여부(검사종료일 전 제출)		□	□	□
	다. 정비교범, 오버홀/수리교범, 부품도해목록 (IPC), 비행교범 및 승무원 운영교범 최신판 확보여부		□	□	□
	라. 중량과 평형 보고서 작성내용 및 적절성		□	□	□
	마. 좌석형상도의 적절성(비상장비 비치 요건 충족 여부 포함)		□	□	□
	감독의견				
2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 현황 및 이행여부**		□	□	□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감독의견				
3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수행현황**		□	□	□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감독의견				
4	**수입 또는 운영권 이전에 따른 중고 항공기에 관한 다음 사항**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가. 이전 운영자의 항공기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이행여부		□	□	□
	나. 이전 운영자의 정비프로그램과 신규 운영자 (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 차이 발생에 따른 추가 정비 이행 여부		□	□	□
	다. 사용수명한계 품목의 현황 및 수명한계 초과 여부		□	□	□
	감독의견				

검사 항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5	**주요 구조부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 또는 개조기록 현황 및 기술기준 적합 여부**		☐	☐	☐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감독의견				
6	**이전 운영국가의 말소등록 서류 제출(검사종료일 전 제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5조			
	감독의견				
7	**탑재용 항공일지 및 지상비치용 항공일지(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가.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		☐	☐	☐
	나. 결함, 반복결함 조치상태		☐	☐	☐
	감독의견				
8	**각종 정비 기록**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가. 마그네틱 컴퍼스 스윙 상태 및 기록		☐	☐	☐
	나. 제작 비행시험 결과 보고서 및 결함 시정조치 현황		☐	☐	☐
	다.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수정조치		☐	☐	☐
	라. 최소장비목록(MEL) 적용상태		☐	☐	☐
	마. 위탁정비 수행 및 확인상태		☐	☐	☐
	감독의견				
9	**기 타**		☐	☐	☐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감독의견				
검사 결과					
검사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감항증명 발급 지침 [별지 제2호서식] (3쪽 중 1쪽)

갱신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 항공기 현황

가. 항공기체				
1) 등록기호	HL		2) 운영자명	
3) 검사장소			4) 검사기간	~
5) 항공기 종류			6) 항공기 형식명	
7) 감항 분류			8) 사업구분	
9) 등록증명서	번호:		10) 등록일자	
11) 등록 정치장			12) 운용한계지정서	번호:
13) 감항증명서	번호:		14) 유효기간	~
15) 제작사				
16) 제작일련번호			17) 제작일자	
18) 최대이륙중량			19) 최대착륙중량	
20)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		21) 정비 후 시간 /사용횟수	/
22) 최근 주요 정비	정 비 명			
	정비 확인자/업체		(자격번호:)	

나. 엔진 (장착 수:)				
1) 엔진 형식명				
2) 제작사				
3) 장착위치	#1	#2	#3	#4
4) 제작 일련번호				
5) 제작일자				
6)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7) 장착일자				
8) 최근 주요정비명 (수행일자)				

다. 프로펠러 (장착 수:)				
1) 프로펠러 형식명				
2) 제작사				
3) 장착위치	#1	#2	#3	#4
4) 제작 일련번호				
5) 제작일자				
6)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7) 장착일자				
8) 최근 주요정비명 (수행일자)				

검사 항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1	**제출서류 심사**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가. 비행교범 개정 이력 및 최신 개정판 여부	☐	☐	☐
	나. 중량 및 평형보고서 작성 내용 및 유지관리 상태의 적절성(실적이 있는 경우)	☐	☐	☐
	다. 사용중지 중 보관 정비 수행 적절성	☐	☐	☐
	감독의견			
2	**각종기술지시(AD, SB 등) 수행여부**	☐	☐	☐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가. 각종 기술자료 확보 및 적용 상태	☐	☐	☐
	나. 작업지시서 등 발행 및 이행 상태	☐	☐	☐
	다. 지원된 특수공구 및 장비활용상태	☐	☐	☐
	라. 수행 및 확인 상태	☐	☐	☐
	마.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	☐	☐	☐
	바. 반복점검 작업 및 기록상태	☐	☐	☐
	사. 작업결과 보고 상태	☐	☐	☐
	아. 기 타	☐	☐	☐
	감독의견			
3	**정비프로그램/검사프로그램 등의 이행여부**			
	관련근거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가. 운항정비 수행 및 조치사항	☐	☐	☐
	나. 정시점검 수행 및 확인상태	☐	☐	☐
	다. 기체 오버홀 수행 및 관리상태	☐	☐	☐
	라. 점검카드 작성 및 수정조치상태	☐	☐	☐
	마. 부품정비방식 관리상태	☐	☐	☐
	바. 시한성 품목 교환 및 관리상태	☐	☐	☐
	사. 최소장비목록(MEL) 적용상태	☐	☐	☐
	아. 위탁정비수행 및 확인상태	☐	☐	☐
	자. 신뢰성방식 이행상태	☐	☐	☐
	차. 자체검사체제 및 조치상태	☐	☐	☐
	카. 각종 기록관리 및 보고상태	☐	☐	☐
	타. 기 타	☐	☐	☐
	감독의견			

검사 항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4	**수리·개조 작업 상태**		☐	☐	☐
	가. 승인받지 않은 수리·개조 여부		☐	☐	☐
	나. 대수리 및 대개조 사항의 보고 여부		☐	☐	☐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감독의견				
5	**탑재용 항공일지 및 지상비치용 항공일지(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				
	가.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		☐	☐	☐
	나. 결함, 반복결함 조치상태		☐	☐	☐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감독의견				
6	각종 정비 기록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가. 마그네틱 컴퍼스 스윙 상태 및 기록		☐	☐	☐
	나. 최소장비목록(MEL) 적용상태		☐	☐	☐
	다. 위탁정비 수행 및 확인상태		☐	☐	☐
	감독의견				
7	기 타		☐	☐	☐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Subpart H 부록 A			
	감독의견				
검사 결과					
검사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감항증명 발급 지침 [별지 제3호서식] (12쪽 중 1쪽)

신규 및 갱신 감항증명 상태검사표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1. 동체 외부 (FUSELAGE GROUP)					
1.가.	등록기호표 재질 및 부착(주출입구 안쪽 위) 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감독의견				
1.나.	항공기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		☐	☐	☐
	관련근거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21.182(a), 45.11			
	감독의견				
1.다.	국적 및 등록기호 표시 위치, 크기 및 형식의 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 제17조			
	감독의견				
1.라.	항공기 조명설비(착륙등, 충돌방지등,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의 정상 작동 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감독의견				
1.마.	안테나 등 외부 부착물의 손상 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1.바.	동체외부 표시(decal) 부착 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1.사.	객실, 화물실 등의 각종 출입문 작동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1.아.	외부 패널(panel), 커버(cover) 장착 고정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1.자.	동체외부의 부식, 균열, 손상 등 이상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1.차.	연료, 윤활유 등의 누유 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1.카.	파괴위치 표시(Marking of Break-in Points)		□	□	□
	관련근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1.14.5			
	감독의견				
1.파.	기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2. 조종실 및 객실 (COCKPIT-CABIN GROUP)					
2.가.	구급용구의 비치상태		□	□	□
2.가.1)	구명동의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2)	음성신호발생기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3)	구명보트(비상신호등, 방수휴대등, 불꽃조난신호장비 포함)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4)	헬리콥터 부양장치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5)	불꽃조난신호장비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2.가.6)	소화기(조종실 및 객실)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7)	도끼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8)	메가폰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9)	구급의료용품(First-Aid Kits)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10)	감염예방 의료용구(Universal Precaution Kit)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가.11)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2.나.	승무원(조종, 객실) 안전벨트, 어깨끈의 안전 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감독의견				
2.다.	승객 좌석의 바닥 고정, 등받이 작동, 안전벨트의 손상여부 등의 안전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감독의견				
2.라.	객실 승무원 좌석 (승객을 운송하는 항공기)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1조			
	감독의견				
2.마.	항공기 탑재서류 비치상태		☐	☐	☐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2.마.1)	항공기등록증명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2)	감항증명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3)	탑재용 항공일지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5)	운항규정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6)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8)	각 운항승무원의 자격증명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9)	무선국 허가증명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2.마.10)	비행 전 및 각 비행 단계별 점검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마.11)	기타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			
	감독의견				
2.바.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장착 및 작동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및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1.14.6			
	감독의견				
2.사.	헬리콥터 기체진동감시시스템 장착 및 작동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5조			
	감독의견				
2.아	방사선 투사량 계기 장착 및 작동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			
	감독의견				
2.자	항공계기 장치 장착 및 작동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및 별표 16			
	감독의견				
2.차	제·방빙 장치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8조			
	감독의견				
2.카	창문 및 창문 가리개 균열 및 손상 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2.타	플래카드 부착 및 조치 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2.파	내부 비상구 표식 및 조명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감독의견				
2.하	객실 방송시스템 및 인터폰 작동상태		☐	☐	☐
	관련근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3.1.4			
	감독의견				
2.거	화장실 화재 방지시스템 작동상태		☐	☐	☐
	관련근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1.14.12			
	감독의견				
2.너	마하수 지시기(Mach Number Indicator)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감독의견				
2.더	승객안내표시(Passenger Information Signs)		☐	☐	☐
	관련근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4.9.2			
	감독의견				
3	**엔진 및 엔진덮개 (ENG-NACELLE GROUP)**				
	가. 엔진 주요부품 장착 및 이상 상태		☐	☐	☐
	나. 흡입구 상태		☐	☐	☐
	다. 연료계통배관의 누설 등 이상상태		☐	☐	☐
	라. 오일계통배관의 누설 등 이상상태		☐	☐	☐
	마. 작동유계통의 배관 등 이상상태		☐	☐	☐
	바. 엔진장착부 안전상태		☐	☐	☐
	사. 엔진덮개의 작동상태		☐	☐	☐
	아. 엔진배기변의 이상상태		☐	☐	☐
	자. 그 밖에 엔진 및 나셀의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4	**착륙장치 (LANDING GEAR GROUP)**				
	가. 주 착륙장치의 전반적인 상태		□	□	□
	나. 전/후방 착륙장치의 전반적인 상태		□	□	□
	다. 착륙장치의 연결기, 접개장치 상태		□	□	□
	라. 완충버팀대의 장착상태		□	□	□
	마. 작동기배선, 배관의 안전상태		□	□	□
	바. 타이어, 휠 및 브레이크 상태		□	□	□
	사. 헬리콥터 SKID 및 CROSS TUBE 상태		□	□	□
	아. 그 밖에 착륙장치 부위의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5	**날개 (WINGS GROUP) - 고정익항공기/활공기**				
5.가	국적 및 등록기호 표시 위치, 크기 및 형식의 상태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 ~ 제17조			
	감독의견				
5.나	날개외피의 이상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5.다	고양력장치 보조익 외피 이상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5.라	작동기의 작동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5.마	연료탱크 주위 누설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5.바	날개의 점등장치의 장착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5.사	그 밖에 날개 부위의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6	**후방 동체 (EMPENNAGE GROUP)**				
	가. 수직 및 수평날개의 외피상태		☐	☐	☐
	나. 승강타 및 방향타 장착, 작동상태		☐	☐	☐
	다. 그 밖에 후방 동체의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7	**동체 내부 및 전기·전자장비**				
7.가	전자장비실의 부식균열 등 이상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7.나	동체 내부 및 전자장비실 청결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7.다	각종 배선의 꼬임, 고정상태, 변색 등의 노화, 불에 탄 흔적 등 이상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7.라	배터리/동력공급 장치 부식여부 및 연결상태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7.마	보호용 회로 퓨즈(Protective Circuit Fuses)		☐	☐	☐
	관련근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1.21.3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8	**프로펠러 (PROPELLER GROUP) - 고정익항공기**				
	가. 프로펠러 장착상태		☐	☐	☐
	나. 프로펠러 날개깃 상태		☐	☐	☐
	다. 프로펠러 작동기 상태		☐	☐	☐
	라. 프로펠러 중심부(HUB) 상태		☐	☐	☐
	마. 그 밖에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9	**주 회전날개 (MAIN ROTOR GROUP) - 헬리콥터**				
	가. 회전익 외부 및 장착상태		☐	☐	☐
	나. 변속기어부 오일보급 및 누설상태		☐	☐	☐
	다. 변속기어부 장착상태		☐	☐	☐
	라. 회전각 각조절 계통상태		☐	☐	☐
9	마. SWASH PLATE 장착상태		☐	☐	☐
	바. MAIN ROTOR HEAD의 장착상태		☐	☐	☐
	사. 그 밖에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10	**꼬리 회전날개 (TAIL ROTOR GROUP) - 헬리콥터**				
	가. 꼬리 회전날개의 손상 및 장착상태		☐	☐	☐
	나. TAIL ROTOR 기어박스 장착상태		☐	☐	☐
	다. 기어박스 오일 LEVEL 및 누설여부		☐	☐	☐
	라. 날개 각 조작계통(PITCH LINK SYS)		☐	☐	☐
	마. 기어박스 FAIRING 장착상태		☐	☐	☐
	바. TAIL BOOM		☐	☐	☐
	사. 그 밖에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	☐	☐
	관련근거	해당 항공기 정비교범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11	안전 운항을 위한 필요 장비 등				
11.가	무선설비		□	□	□
11.가.1)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 무선전화 송수신기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감독의견				
11.가.2)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감독의견				
11.가.3)	자동방향탐지기(ADF)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감독의견				
11.가.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감독의견				
11.가.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감독의견				
11.가.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감독의견				
11.가.7)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감독의견				
11.가.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11.가.9)	조난 시 위치정보 발신기(ELT-DT)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감독의견				
11.나.	사고예방장비		□	□	□
11.나.1)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감독의견				
11.나.2)	지상접근경고장치(GPWS)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감독의견				
11.나.3)	전방돌풍경고장치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감독의견				
11.나.4)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	□	□
11.나.5)	P/N , 위치, ULB Due date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감독의견				
11.나.6)	대체 동력(Alternate Power Source)		□	□	□
	관련근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1.17.3			
	감독의견				
11.나.7)	비행자료기록장치(FDR)의 P/N, 위치, ULB Due date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감독의견				
11.나.8)	데이터 링크 기록장치(DLR)		□	□	□
	관련근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7.1.17.4			
	감독의견				

점검 내용			점검결과		
			만족 SA	불만족 US	비해당 N/A
11.다.	그 밖에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	☐	☐
11.다.1)	시계비행, 계기비행(또는 관제비행(Controlled flight)으로 운항하는 시계비행) 을 위한 장비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 및 별표 16			
	감독의견				
11.다.2)	해상비행을 위한 장비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11.다.3)	지정된 육상 지역의 비행(FLIGHTS OVER DESIGNATED LAND AREAS)을 위한 장비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110조 및 별표 15			
	감독의견				
11.다.4)	여압손실 경고장치 - 고고도 비행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4조			
	감독의견				
11.다.5)	단독 조종(Single Pilot)으로 계기비행 또는 야간 비행하는 비행기를 위한 장비		☐	☐	☐
	관련근거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14			
	감독의견				
11.다.6)	활주로 이탈 인식 및 경보 시스템(ROAAS)		☐	☐	☐
	관련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9조			
	감독의견				
검사 결과					
검사관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감항증명 발급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항공기 수시검사 점검표

검 사 항 목	서류검사 결과	현장검사 결과	비고
1. 정비(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정비 수행현황 (엔진, 프로펠러 및 주요 장비품 교환실적 등 포함)			
2. 수리 · 개조 수행현황			
3. 감항성개선지시서(AD) 수행현황			
4. 주요 정비개선회보(MSB/ASB) 수행현황			
5. 항공기 사고, 준사고, 고장 등으로 인한 항공안전장애* 발생현황과 조치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제20의2, 제5호 항공기 화재 및 고장 관련사항에 한함)			
6. 반복결함 발생 및 조치현황			
7. 경년항공기 정비프로그램(운송용 항공기 해당) 또는 안전관리(운송용 이외 항공기) 수행현황			
8. 중량 및 평형보고서(운송용의 경우, 그 외는 중량 및 평형 실적)			
9. 기 타			
▪ 서류검사결과			
▪ 현장검사결과			

검사관	서류검사 일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현장검사 일자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